

선 람	기관의 장



제11호 2023. 3. 15.(수)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3-95호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1
광양시 고시 제2023-99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2
광양시 고시 제2023-100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고시	4
광양시 고시 제2023-101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5
광양시 고시 제2023-102호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7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3-515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금호3공원(철조각공원)] 결정(변경) (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	9
광양시 공고 제2023-596호	상속 미이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13

규 정

광양시 규정 제433호	광양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15
--------------	---------------	----

규 칙

광양시 규칙 제908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47
--------------	------------------------	----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323, 행정2713)

광양시 고시 제 2023 - 95 호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광양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석사2지구, 조령2지구, 율천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8일

광 양 시 장

1. 책임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2.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 하단표 참조

3. 사업위치 및 면적 : 하단표 참조

토지소재지	지구명	필지수	면적(㎡)	소유자(명)	사업비(천원)
	3개 지구	2,347	1,600,633	874	438,889
봉강면 석사리	석사2지구	712	671,935	227	133,144
봉강면 조령리	조령2지구	1,041	632,805	377	194,667
봉강면 율천리	율천지구	594	295,893	270	111,078

4. 위탁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등

5. 기타 : 책임수행기관은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위탁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15.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문1길 39-3 외 6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3.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 물 번 호 부 여 7 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116-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문1길 39-3	20230315	20100331	옛 광양읍성 남문거리의 지명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28, 2234-1, 2267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울촌산단8로 55	20230315	20190307	울촌산업단지 명칭 인용 도로명 부여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묵백리 1408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묵백길 66	20230315	20170628	옥곡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규 개설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143-1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로 9 (마동)	20230315	20111229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 이라는 옛 지명 인용
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마동 1143-2	전라남도 광양시 눈소로 11 (마동)	20230315	20111229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 이라는 옛 지명 인용
6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78-1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도월길 168-25	20230315	20081001	법정리명에서 인용
7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665-2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비촌길 18-14	20230315	20090902	행정리명에서 인용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고시합니다.

〈변경 내역〉

연 번	도 로 명 주소		변경고시일 (효력발생일)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1	전남 여수시 율촌면 율촌산단3로 18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율촌산단3로 175	2023. 3. 15.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15.

광 양 시 장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봉강면 신촌길 114	2023. 3. 15.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축물 멸실 (※상세내역 불임참조)
2	이 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15.

광 양 시 장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연 번	업무 구분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말소일 (건축물멸실 확인일)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건물번호 폐지	광양시 봉강면 신촌길 114	2017. 7. 11.	2023. 3. 15.	건축물대장 말소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2023. 3. 15.(수)
2. 고시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붙임조서 참조) 1건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설정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구간 설정 조서

연번	도로명	도로구분	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 (m)	폭 (m)		시작	끝		
1	세풍산단로 (1차종속도로)	로	광양읍	광양읍 세풍리 2245	광양읍 세풍리 2015	도면 참조	588	11.5	20	26-1	26-58	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인용	

도로구간(중심선)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금호3공원(철조각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금호3공원(철조각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제2항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2023. 3. 15.

광 양 시 장

1. 건 명: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금호3공원(철조각공원)] 결정(변경)(안)
2. 위 치: 광양시 금호동 716-1
3. 열람기간: 2023. 3. 15. ~ 2023. 3. 29. (15일간)
4. 열람장소: 광양시 광양읍 서천변로 177, 2층(공원과)
5.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금호3공원(철조각공원)]결정(변경)입안(안)의 주민 열람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의견서를 공고 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의견서 공원과 비치)
6. 기타사항: 관계도서 및 세부시설 사항 등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양시청 공원과(☎797-29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금호3공원(철조각공원)] 결정(변경) 조서 1부.

[붙임]

1.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금호3공원(철조각공원)]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 치	시설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1	금호3공원	근린공원	금호동 716-1번지 일원	18,620	-	18,620	1995.2.13.	

나. 공원조성계획 총괄내역 결정(변경)

구 분		시설면적(㎡)						부지율 (%)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8,620	-	18,620	-	433.84	-	813.60	100.0	
시설소계		3,939	증) 1,158	5,097	-	433.84	-	813.60	27.4	
도로및광장	소계	3,227	증) 190	3,417	-	-	-	-	18.4	
	도로	2,460	증) 190	2,650	-	-	-	-	14.2	
	광장	767	-	767	-	-	-	-	4.1	
조경시설		163	-	163	-	-	-	-	0.9	
휴양시설		354	-	354	-	-	-	-	1.9	
운동시설		195	-	195	-	-	-	-	1.0	
교양시설		-	증) 679	679	-	433.84	-	813.60	3.6	
편익시설		-	증) 289	289	-	-	-	-	1.6	
녹지및기타		14,681	감) 1,158	13,523	-	-	-	-	72.6	

다. 변경사유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21	금호 3공원	조 성 계 획 변 경	교양시설(건강생활지원센터) 및 편익시설(주차장) 신설로 인한 면적 변경

라. 세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변경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축면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계	기정	소 계		금호동 716-1	18,620	-	-	
	변경				18,620	433.84	813.60	
시설 소계	기정	소 계		금호동 716-1	3,939	-	-	시설률 : 21.2%
	변경				5,097	433.84	813.60	시설률 : 27.4%
도로 및 광장	소 계			ㄴ	3,417	-	-	
	기정	-	도로	ㄴ	2,460	-	-	
	변경	-	도로	ㄴ	2,650	-	-	
	기정	가-1	광장	ㄴ	467	-	-	
	기정	가-2	광장	ㄴ	72	-	-	
	기정	가-3	광장	ㄴ	228	-	-	
조정 시설	소 계			ㄴ	163	-	-	
	기정	나-1	조각 ①	ㄴ	12	-	-	
	기정	나-2	조각 ②	ㄴ	12	-	-	
	기정	나-3	조각 ③	ㄴ	86	-	-	
	기정	나-4	조각 ④	ㄴ	12	-	-	
	기정	나-5	조각 ⑤	ㄴ	29	-	-	
	기정	나-6	조각 ⑥	ㄴ	12	-	-	
휴양 시설	소 계			ㄴ	354	-	-	
	기정	다-1	파고라	ㄴ	55	-	-	
	기정	다-2	그늘쉼터	ㄴ	72	-	-	
	기정	다-3	휴게그늘	ㄴ	87	-	-	
	기정	다-4	그늘쉼터	ㄴ	140	-	-	
운동 시설	소 계			ㄴ	195	-	-	
	기정	라-1	체력단련장 ①	ㄴ	96	-	-	
	기정	라-2	체력단련장 ②	ㄴ	99	-	-	
교양 시설	소 계			ㄴ	679	433.84	813.60	
	신설	마-1	건강생활지원센터	ㄴ	679	433.84	813.60	
편익 시설	소 계			ㄴ	289	-	-	
	신설	바-1	주차장	ㄴ	289	-	-	
녹지 및 기타	기정	녹지		ㄴ	14,681	-	-	녹지율 : 78.8%
	변경			ㄴ	13,523	-	-	녹지율 : 72.6%

마.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총 계					911	2,650				
가정	보행자도로	1	1	3	205	356	금호동 781	금호동 779	보행자도로	
가정	주진입도로	2	1	3	39	158	보행자도로 1-1	산책로 3-1	주진입도로	
가정	주진입도로	2	2	3	13	58	금호동 778	산책로 3-1	주진입도로	
가정	주진입도로	2	3	3	13	49	금호동 716	산책로 3-1	주진입도로	
변경	주진입도로	2	3	3	34	68	금호동 716	산책로 3-8	주진입도로	
가정	주진입도로	2	4	3	22	114	금호동 716	산책로 3-8	주진입도로	
가정	주진입도로	2	5	3	23	85	금호동 716	산책로 3-8	주진입도로	
가정	주진입도로	2	6	3	16	79	금호동 716	광장(가-3)	주진입도로	
가정	주진입도로	2	7	3	17	76	보행자도로 1-1	광장(가-3)	주진입도로	
가정	주진입도로	2	8	3	15	69	보행자도로 1-1	광장(가-1)	주진입도로	
신설	주진입도로	2	9	6	17	110	금호동 778	건강생활지원센터 (마-1)	주진입도로	
가정	산책로	3	1	3	310	935	광장(가-1)	광장(가-1)	산책로	
변경	산책로	3	1	3	79	275	광장(가-1)	산책로 3-2	산책로	
가정	산책로	3	2	3	16	39	산책로 3-1	광장(가-2)	산책로	
변경	산책로	3	2	3	41	91	주차장(바-1)	광장(가-2)	산책로	
가정	산책로	3	3	3	54	176	광장(가-1)	광장(가-2)	산책로	
가정	산책로	3	4	3	49	91	광장(가-1)	산책로 3-8	산책로	
가정	산책로	3	5	3	35	87	산책로 3-8	산책로 3-8	산책로	
가정	산책로	3	6	3	24	88	산책로 3-8	산책로 3-8	산책로	
신설	산책로	3	7	3	17	35	주진입도로 2-9	산책로 3-2	산책로	
신설	산책로	3	8	3	211	634	산책로 3-2	광장(가-1)	산책로	

상속 미이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고

사망자 명의 상속 미이전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등)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명령 처분 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3. 15.

광 양 시 장

1. 공고명칭 :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3년 3월 15일 ~ 2023년 3월 29일 (15일간)
3. 공고대상 : 불임 참조
4. 공고내용 :

가. 사망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상속이전 미이전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나. 해당 자동차의 이해관계인 또는 사용자께서 운행정지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3. 3. 29.(수)까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한까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는 직권 말소됨을 알려드리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의2호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광양시 민원지적과(061-797-3369,33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예고 대상 차량

연번	상속대상 차량번호	주 소	소유자명	반송사유
1	35소0427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차동길 1**	배*익	폐문부재
2	부산6다7177	전라남도 광양시 가야로 3**, 1동 1**호(광영동, 가*아파트)	방*민	폐문부재
3	부산29더4794			
4	경남7거4914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1길 *, 5**동 4*호(중동, 동*아파트)	정*종	폐문부재
5	경남7두2879			
6	부산1다8253			
7	62모0710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길 *-*, 5*호(중동)	임*일	폐문부재
8	29수2665			
9	23더7442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길 *, 1**동 4**호(태인동, 동*아파트)	김*호	폐문부재
10	91주5699			
11	16마8652			
12	11머6978	전라남도 광양시 구마**길 **, 5*호(중동)	유*이	폐문부재
13	292보8419			
14	55고8919	전라남도 광양시 금영로 1*, *동 2*호(광영동, 현*아파트)	차*학	폐문부재
15	82저0850	전라남도 광양시 가야로 3**, *동 6**호(광영동, 가*아파트)	김*주(99%), 『안*숙(1%)』	폐문부재

**광양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3월 15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정 제433호

붙 임 : 광양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광양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광양시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광양시청 소속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중 현업업무 종사자(「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경영책임자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경영책임자”라 한다)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수칙을 지켜야 하며,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광양시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7조(안전보건관리 조직)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경영책임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① 경영책임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업무
2.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 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3.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제10조(안전관리자) ① 경영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업무
2.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3.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4. 안전활동의 지도 및 감독
5. 안전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의 강구, 기록유지 및 보고와 사고사례의 취합
6.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③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10조의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제11조(보건관리자) ① 경영책임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업무
2.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3.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수칙의 이행여부 감독
4. 보건활동의 지도 및 감독
5. 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③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9조의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제12조(산업보건의) ① 경영책임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두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산업보건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중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근로자 대표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자발적인 재해예방업무 참여 촉진을 위하여 경영책임자의 의견을 들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 할 수 있다.

-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4조(위원회의 설치) 경영책임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광양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각 5명 이내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된 경우)

3. 위원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3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총무과장

3. 안전총괄과장

4. 안전관리자

5. 보건관리자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근로자와 사용자 각 1명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사용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대표위원의 임기에 따르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신분 및 활동보장) ① 위원이 위원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9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임시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이나 이행방법 등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고용노동부 등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은 필요한 경우 업무 관련자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 관련자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간사 등의 실무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제22조(회의 결과 등의 공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업무용 전자게시판 등을 통하여 전 근로자에게 신속히 공지해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3조(안전·보건 교육계획수립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24조(안전보건교육의 종류) ①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대상과 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제25조(교육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② 사업장 자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정기교육) ① 정기교육은 근로자 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4, 교육내용은 별표5에 따른다.

제27조(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8시간 이상,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근로자에게는 2시간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작업배치 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다.

제28조(특별교육)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과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대상별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직무교육) 제23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 대상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30조(교육 서류의 보존) 관리감독자는 교육 실시 후 별지2호서식에 따른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를 받아 보존해야 한다.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31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라 부서별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2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해당 기계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추가로 해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② 그 밖의 사항은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③ 근로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3조(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서 사용 중에 있는 유해·위험기계·기구를 위탁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는 시행령 제78조에서 규정한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따른다.

③ 검사 결과 교부받은 검사확인증은 해당 기계·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제34조(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근로자는 법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경영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위험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화기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제36조(안전표지 및 수칙)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조치의 안내 등 관계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안전표지는 관리감독자의 책임아래에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③ 근로자 등은 항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을 보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지시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37조(작업중지)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경영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8조(안전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그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③ 안전·보건관리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인해줄 의무가 있다.
- ④ 안전·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 상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시정지시를 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9조(비상조치계획)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 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 시 또는 비상대피 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의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③ 비상대비 및 대응내용에는 인근주민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40조(피난 및 대응훈련) 관리감독자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해야 한다.

제41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관리감독자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사업장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6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2조(작업환경측정)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제43조(측정결과의 조치)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작업환경을 측정한 경우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

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

제44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 전환, 야간근무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한다.

③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진단을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45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환기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제46조(보호구 지급) ① 경영책임자는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과 지급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절연용 보호구
2. 전기, 산소용접 그 밖에 강렬한 광선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 보안경

3. 쇳가루가 많이 발산하는 장소의 작업 : 보안경
4. 소음이 많은 장소의 작업 : 귀마개, 귀덮개
5.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발산하는 장소의 작업 : 호흡기용 보호구
6. 피부에 상처를 주는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 : 보호의
7.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8. 그 밖에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② 제1항 각 호의 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는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47조(자격 또는 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경영책임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경우 법 제140조에 따른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① 경영책임자는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② 근로자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49조(보건표지 및 수칙)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장에 맞게 보건표지 및 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근로자는 보건수칙을 항상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50조(유해요인조사 등) ①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 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전·후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결과에 반영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사업장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작업대의 높이 또는 작업 반경
2. 동선이 고려되는 업무
3. 컨베이어벨트 등 순환작업의 속도
4. 기타 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작업

③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업장은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갯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장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제52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경영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

제5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경영책임자는 도급 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시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제8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54조(사고 재해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필요한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재해발생 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5조(긴급조치) ①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고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연쇄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 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6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보건관리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제5호서식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근로자 대표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④ 안전사고 발생 부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등을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제57조(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자는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해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개선요구서에 따라 개선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자는 행정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 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9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58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

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지정 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제59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을 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를 조언하며, 위험성평가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등의 방법으로 해당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실시 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그 결과를 3년 이상 기록으로 유지·관리한다.

제10장 보 칙

제60조(무재해운동)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무재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61조(준수) ①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

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2023년 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 년 월 일 (: ~ :)	장 소		회의구분	(정기, 임시)
참 석 위 원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부 시 장	(서명)	근로자대표	(서명)	
	총무과장	(서명)	위 원	(서명)	
	안전총괄과장	(서명)	위 원	(서명)	
	안전관리자	(서명)	위 원	(서명)	
	보건관리자	(서명)	위 원	(서명)	
심 의 · 의 결 사 항	◆심의사항 ◆의결사항				
기 타 사 항					

사 진 대 지

[별지 제2호서식]

<u>안전보건 교육일지</u>		결	담당자	팀 장	과 장
		재			
작성일자 : 20 . . 작성자 :					
교육의 구 분	가. 정기교육 나. 채용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및 내용(3P 참고)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교육 미실시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교육과목(교육시간)	(시간)				
교육내용 및 근로자 건의사항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실시장소		비 고
특기사항					
사진대지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illegible]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및 내용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내용

교육과정	교육대상	내 용	교육시간
공통사항 (교육대상 모두 해당)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정기교육	현업근로자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일용직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시간 이상
	일반직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일용직		1시간 이상
	일반직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유해·위험업무 종사 시	· 고압실 내 작업, 아세틸렌 용접작업, 밀폐공간 용접작업, 폭발성 물질 취급작업, 액화석유가스 발생 작업 등 40가지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에 따라 2~16시간 이상

[별지 제3호서식]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지급일자	소 속	성 명	지 급 내 용		확 인 (서 명)	비 고
			품 목	수 량(개)		

[별지 제4호서식]

사고 보고서

☐ 재해자 인적사항

부서명		성명		나이		성별	
입사일자		재직기간		사고일시			
상병부위				상해정도	공상. 경상. 중상. 사망		

☐ 사고 발생 경위

1. 언제	
2. 어디서	
3. 누가	
4. 무엇을	
5. 어떻게	
6. 왜(기타)	

☐ 재해 장소 설비 사진 2매

내용 :	내용 :
“ 사진 ”	“ 사진 ”

※ 사고 보고서는 추측, 의견을 배제하고 보고 들은 사실만 기록합니다.

사고 보고서(재발 방지 대책)

부서명		작성자		작성일자	
-----	--	-----	--	------	--

☐ 원인분석

☐ 시정(단기적)조치

☐ 재발방지 대책

항 목	내 용
1. 관리적	
2. 설비적	
3. 인 적	
4. 물질·환경적	
5. 기 타	

[별지 제5호서식]

산업재해 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 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민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국적	[]내국인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그 밖의 사항 []				
	⑭근무형태	[]정상 []교대 []3교대 []4교대 []시간제 []그 밖의 사항 []				
	⑮상해종류 (질병명)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⑰휴업예상 일수	휴업 []일

III.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⑱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⑲재해발생원인		

IV. ⑳재발 방지 계획	
------------------------	--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성명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전화번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작업지역·공정	□□□ □□□	기인물 작업내용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등)

문서번호 :

2023. . .

수 신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산재예방지도과장)

팩스 061-650-0230

발 신 :

1.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원 청 하 청		대 표 자		소 재 지		근 로 자 수		업 종	

2.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 해 정 도
					년 월	☐ 사망(명) ☐ 부상(명) (치료예상기간 : 일)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 시	장 소	발 생 형 태	기 인 물	행 정 조 치
				☐ 시정지시 ☐ 사용중지 ☐ 부분·전면작업중지 ☐ 기타 ☐ 해당없음

○ 재해발생 인지경위 :

○ 재해발생경위 (6하 원칙)

○ 조치 및 전망

○ 기타 중요한 사항(경찰서 조사관계 등)

위 보고인 사업장명 :

대 표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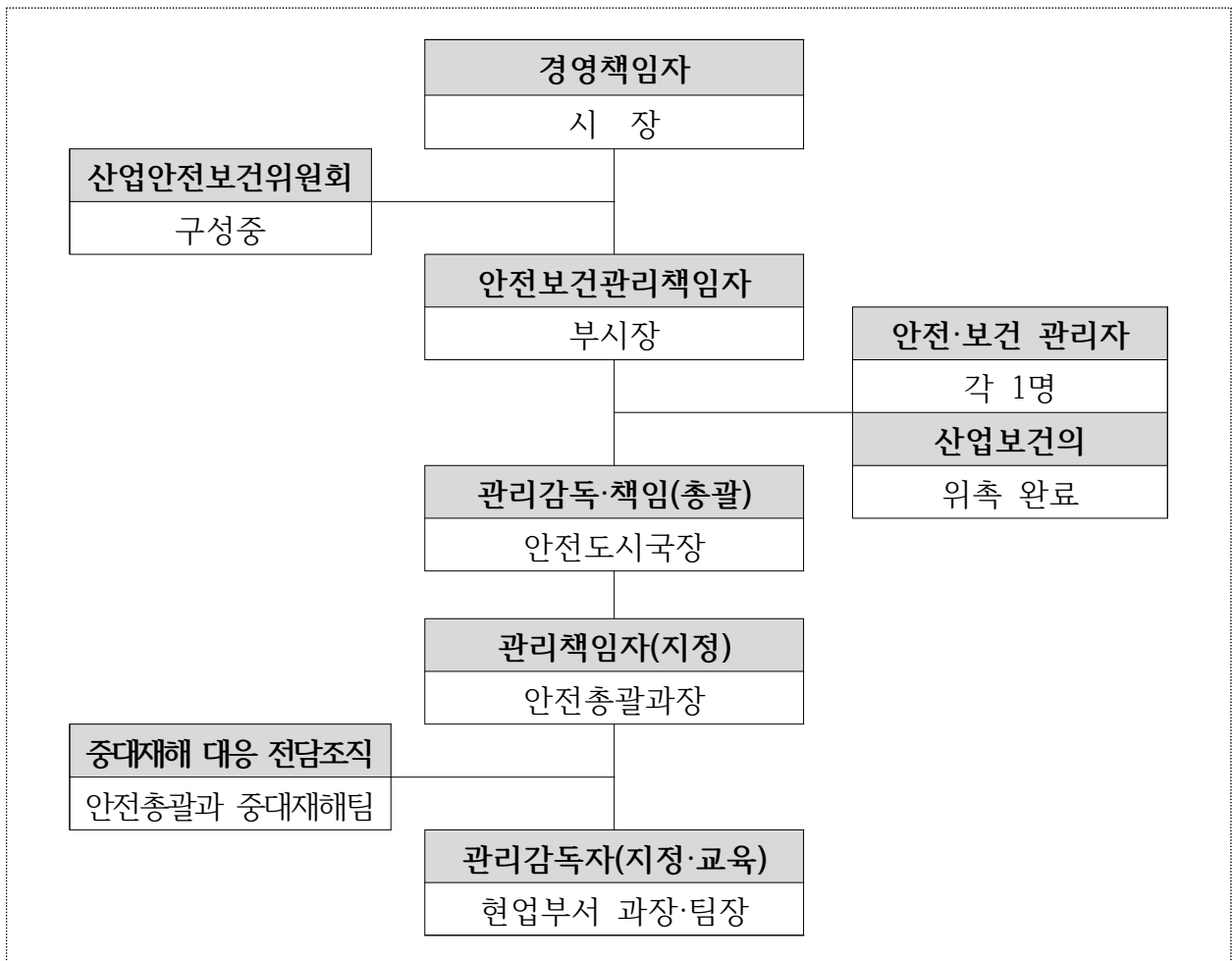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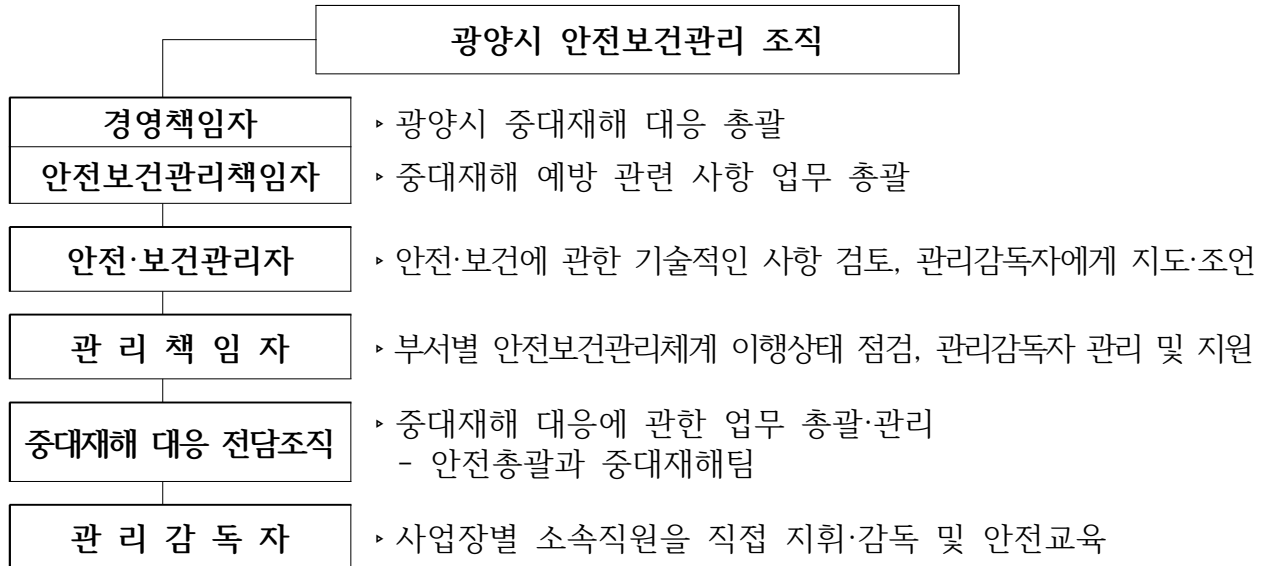
(인)

전화번호 : ☎

(휴대폰 :)

[별표]

광양시 안전보건관리 조직(제6조 관련)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15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08호

붙 임 :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